

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03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0. 1 . 7.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- 기구(생명환경농업연구소)의 신설에 따른 직급을 책정
-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직급 하향조정
-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으로 본청 담당부서의 업무량이 증대됨에 따라 본청과 읍면의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
- 기능직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현원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정원 10명 책정 (안 별표3)
- 나. 총정원 631→632명(증1), 일반직 507→509명(증2), 기능직 83 → 82명(감1)
일반직 4급 2명 → 1명(감1), 일반직 5급 33명 → 35명(증2)
- 다. 기능직 6급 정원책정기준 8.5%이내 → 9%이내 (증 0.5%)
기능직 10급 정원책정기준 18.5%이상 → 18%이상 (감 0.5%)

3. 참고사항

- 가. 입법예고
- 2009. 12. 23~2010.1.2(10일간)
- 나. 관련법령 및 근거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- 다. 예산조치 :

4. 본 문 : 덧붙임과 같음

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31명”을 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32명”으로 하고, 동조제1호중 “집행기관의 정원 : 617명”을 “집행기관의 정원 : 618명”으로 한다.

[별표2]와 [별표3]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-(개정안)

1. 일반직공무원

구 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
비 율	1% 이내	7% 이내	29% 이내	32% 이내	25% 이내	6% 이상

비고 : 읍·면의 정원을 포함한다.

2. 기능직공무원

구 분	6급	7급	8급	9급	10급
비 율	9% 이내	22% 이내	20% 이내	31% 이내	18% 이상

비고 : 읍·면의 정원을 포함한다.

3. 연구직·지도직공무원

구 분	연구직		지도직	
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
비 율	3% 이내	97% 이상	10% 이내	90% 이상

비고 : 읍·면의 정원을 포함한다.

4. 별정직공무원

구 분	5급	6급	7급	8급	9급
비 율	-	93% 이내	7% 이내	-	-

비고 :

1.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
2. 읍·면의 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3]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- (개정안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 회 사무과	직 속 기 관	사업소	읍·면
총 계	632	280	14	112	50	176
정무직 계	1	1				
군 수	1	1				
일반직 계	509	226	8	73	36	166
4급	1	1				
4~5급	3	2		1		
5급	35	11	3	3	4	14
6급이하 계	470	212	5	69	32	152
기능직 계	82	50	6	7	9	10
별정직 계	14	1		13		
5급상당						
6급상당 이하 계	14	1		13		
연구직 계	2	2				
연구관						
연구사	2	2				
지도직 계	24			19	5	
지도관	2			2		
지도사	22			17	5	

신구조문 대비표

현	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행	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안	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31명이며,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617명</p> <p>2. (생략)</p> <p>[별표2]</p> <p>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</p> <p>1. 일반직공무원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h>구 분</th> <th>4급 이상</th> <th>5급</th> <th>6급</th> <th>7급</th> <th>8급</th> <th>9급</th> </tr> <tr> <td>비 율</td> <td>1%</td> <td>7%</td> <td>29%</td> <td>32%</td> <td>25%</td> <td>6%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이내</td> <td>이내</td> <td>이내</td> <td>이내</td> <td>이내</td> <td>이상</td> </tr> </table> <p>비고 : 읍·면의 정원을 포함한다.</p> <p>2. 기능직공무원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h>구 분</th> <th>6급</th> <th>7급</th> <th>8급</th> <th>9급</th> <th>10급</th> </tr> <tr> <td>비 율</td> <td>8.5%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18.5%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이내</td> <td>22% 이내</td> <td>20% 이내</td> <td>31% 이내</td> <td>이상</td> </tr> </table> <p>비고 : 읍·면의 정원을 포함한다.</p> <p>3. 연구직·지도직공무원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h rowspan="2">구 분</th> <th colspan="2">연구직</th> <th colspan="2">지도직</th> </tr> <tr> <th>연구관</th> <th>연구사</th> <th>지도관</th> <th>지도사</th> </tr> <tr> <td>비 율</td> <td>3% 이내</td> <td>97% 이상</td> <td>10% 이내</td> <td>90% 이상</td> </tr> </table> <p>비고 : 읍·면의 정원을 포함한다.</p> <p>4. 별정직공무원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h>구 분</th> <th>5급</th> <th>6급</th> <th>7급</th> <th>8급</th> <th>9급</th> </tr> <tr> <td>비 율</td> <td>-</td> <td>93% 이내</td> <td>7% 이내</td> <td>-</td> <td>-</td> </tr> </table> <p>비고 :</p> <p>1.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</p> <p>2. 읍·면의 정원을 포함한다.</p>	구 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비 율	1%	7%	29%	32%	25%	6%		이내	이내	이내	이내	이내	이상	구 분	6급	7급	8급	9급	10급	비 율	8.5%				18.5%		이내	22% 이내	20% 이내	31% 이내	이상	구 분	연구직		지도직	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	비 율	3% 이내	97% 이상	10% 이내	90% 이상	구 분	5급	6급	7급	8급	9급	비 율	-	93% 이내	7% 이내	-	-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 - - -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32명 - - - - -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618명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[별표2]</p> <p>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</p> <p>1. 일반직공무원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h>구 분</th> <th>4급 이상</th> <th>5급</th> <th>6급</th> <th>7급</th> <th>8급</th> <th>9급</th> </tr> <tr> <td>비 율</td> <td>1%</td> <td>7%</td> <td>29%</td> <td>32%</td> <td>25%</td> <td>6%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이내</td> <td>이내</td> <td>이내</td> <td>이내</td> <td>이내</td> <td>이상</td> </tr> </table> <p>비고 : 읍·면의 정원을 포함한다.</p> <p>2. 기능직공무원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h>구 분</th> <th>6급</th> <th>7급</th> <th>8급</th> <th>9급</th> <th>10급</th> </tr> <tr> <td>비 율</td> <td>9% 이내</td> <td>22% 이내</td> <td>20% 이내</td> <td>31% 이내</td> <td>18% 이상</td> </tr> </table> <p>비고 : 읍·면의 정원을 포함한다.</p> <p>3. 연구직·지도직공무원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h rowspan="2">구 분</th> <th colspan="2">연구직</th> <th colspan="2">지도직</th> </tr> <tr> <th>연구관</th> <th>연구사</th> <th>지도관</th> <th>지도사</th> </tr> <tr> <td>비 율</td> <td>3% 이내</td> <td>97% 이상</td> <td>10% 이내</td> <td>90% 이상</td> </tr> </table> <p>비고 : 읍·면의 정원을 포함한다.</p> <p>4. 별정직공무원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h>구 분</th> <th>5급</th> <th>6급</th> <th>7급</th> <th>8급</th> <th>9급</th> </tr> <tr> <td>비 율</td> <td>-</td> <td>93% 이내</td> <td>7% 이내</td> <td>-</td> <td>-</td> </tr> </table> <p>비고 :</p> <p>1.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</p> <p>2. 읍·면의 정원을 포함한다.</p>	구 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비 율	1%	7%	29%	32%	25%	6%		이내	이내	이내	이내	이내	이상	구 분	6급	7급	8급	9급	10급	비 율	9% 이내	22% 이내	20% 이내	31% 이내	18% 이상	구 분	연구직		지도직	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	비 율	3% 이내	97% 이상	10% 이내	90% 이상	구 분	5급	6급	7급	8급	9급	비 율	-	93% 이내	7% 이내	-	-
구 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 율	1%	7%	29%	32%	25%	6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이내	이내	이내	이내	이내	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6급	7급	8급	9급	10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 율	8.5%				18.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이내	22% 이내	20% 이내	31% 이내	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연구직		지도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 율	3% 이내	97% 이상	10% 이내	90%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5급	6급	7급	8급	9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 율	-	93% 이내	7% 이내	-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 율	1%	7%	29%	32%	25%	6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이내	이내	이내	이내	이내	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6급	7급	8급	9급	10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 율	9% 이내	22% 이내	20% 이내	31% 이내	18%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연구직		지도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 율	3% 이내	97% 이상	10% 이내	90%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5급	6급	7급	8급	9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 율	-	93% 이내	7% 이내	-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신구조문 대비표

현행							개정안						
[별표 3]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							[별표 3]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						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 사무과	직속 기관	사업소	읍·면	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 사무과	직속 기관	사업소	읍·면
총 계	631	282	14	118	40	177	총 계	632	280	14	112	50	176
정무직 계	1	1					정무직 계	1	1				
군 수	1	1					군 수	1	1				
일반직 계	507	228	8	74	32	165	일반직 계	509	226	8	73	36	166
4급	2	1		1			4급	1	1				
4~5급	3	2		1			4~5급	3	2		1		
5급	33	11	3	2	3	14	5급	35	11	3	3	4	14
6급이하 계	469	214	5	70	29	151	6급이하 계	470	212	5	69	32	152
기능직 계	83	50	6	7	8	12	기능직 계	82	50	6	7	9	10
별정직 계	14	1		13			별정직 계	14	1		13		
5급상당							5급상당						
6급상당 이하 계	14	1		13			6급상당 이하 계	14	1		13		
연구직 계	2	2					연구직 계	2	2				
연구관							연구관						
연구사	2	2					연구사	2	2				
지도직 계	24			24			지도직 계	24			19	5	
지도관	2			2			지도관	2			2		
지도사	22			22			지도사	22			17	5	